

공시송달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 공고기간: 2026. 6. 16. ~ 2026. 6. 30. (14일간)
- 공고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공고사유
박*현	2009.06.	전주시 완산구 견훤로	2026.7.1.~ 2026.6.30.	폐문부재

4.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거주불명인 경우 재등록 후 신청가능)

5. 발급안내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 × 4.5cm)을 제출.
다만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령.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당자: 김홍현 문의전화(063-220-1744)

2026. 6. 16.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장

